

의안
번호

48

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제6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9.10.-9.1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고 서



창 원 시 의 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고 서

2026.9.10.~ 9.14.
산업경제복지위원회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2026. 8. 26.

나. 제 출 자: 창원시장

다. 회부일자: 2026. 8. 27.(의안번호 제48호)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3. 제안내용

○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2025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시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 월 액	지출잔액
		건수	금액		
계	8,722,484,000	35	8,073,727,519	333,131,330	315,625,151
일 반 회 계	8,672,035,000	34	8,023,279,110	333,131,330	315,624,560
기 획 행 정	144,000,000	6	138,695,360	0	5,304,640
산업경제복지	4,926,000,000	9	4,836,916,800	55,000,000	34,083,200
문화환경도시	2,001,818,000	11	1,830,588,320	36,703,800	134,525,880
건설해양농림	1,600,217,000	8	1,217,078,630	241,427,530	141,710,84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50,449,000	1	50,448,409	0	591
문화환경도시	50,449,000	1	50,448,409	0	591

○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단위 : 원)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지출 사 유
부 서	세부사업					
합 계		4,926,000,000	4,836,916,800	55,000,000	34,083,200	
지 역 경 제 과	소상공인 지원	1,000,000,000	1,000,000,000	-	-	누비전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 역 경 제 과	소상공인 지원	300,000,000	300,000,000	-	-	누비전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 역 경 제 과	창원사랑 상품권 운영	231,000,000	231,000,000	-	-	누비전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 역 경 제 과	창원사랑 상품권 운영	3,000,000,000	3,000,000,000	-	-	누비전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투 자 유 치 단	관세대응 지원	10,000,000	10,000,000	-	-	미국 관세대응 수출기업 긴급 지원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사업)
투 자 유 치 단	관세대응 지원	90,000,000	59,974,400	-	30,025,600	미국 관세대응 수출기업 긴급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투 자 유 치 단	관세대응 지원	40,000,000	40,000,000	-	-	미국 관세대응 수출기업 긴급 지원 (미국 관세대응 지원센터 운영,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사 회 복 지 과	긴급지원	200,000,000	195,942,400	-	4,057,600	저소득 취약계층 한시적 확대 지원
여 성 가 족 과	맘스프리존 조성	55,000,000	-	55,000,000	-	맘스프리존 공간 기획 연구용역 시행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5건, 87억 2천 2백만원임.

- 지출액은 80억 7천 4백만원임.
- 이월액은 3억 3천 3백만원임.
- 지출잔액은 3억 1천 6백만원임.

○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9건, 49억 2천 6백만원임.

- 지출액은 48억 3천 7백만원임.
- 지출잔액은 3천 4백만원임.

○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지역경제과) 4건, 45억 3천 1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5억 3천 1백만원을 지출함.

사유는 금융기관 대출 보증 및 대출금리의 이자 차액 보전 등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과 누비전 발행임.

(단위 : 원)

합 계	소상공인 육성자금			누비전 발행		
	소계	출연금	이자지원금	소계	할인보전금 (10%)	시스템운영비
4,531,000,000	1,300,000,000	1,000,000,000	300,000,000	3,231,000,000	3,000,000,000	231,000,000

- (투자유치단) 3건, 1억 4천만원 지출 결정하여 1억 1천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천만원임.

사유는 미국 관세부과 조치로 품목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감소와 공급망 재편 예상에 따른 수출기업 긴급지원임.

사업명	미국 관세대응 기업애로 지원센터 운영	대미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대미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해외 빅با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지원사업
지원대상	창원 소재 관세 피해 및 우려 기업	창원 소재 대미 수출 중소기업	창원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2024년 직수출 실적 5,000만불 이하 기업	관내 수출 희망 중소기업
예산액	30,000천원	10,000천원	90,000천원	10,000천원
사업내용	수출 애로사항 접수 및 우수 관세사 현장방문 컨설팅 및 지원사항 안내	수출 거래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 대비 수출보험료 지원	항공·해상 수출품 물류비 지원	글로벌 비즈센터 연계 해외 빅با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 (사회복지과) 1건, 2억 원 지출 결정하여 1억 9천 6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백만 원임.

사유는 민생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한용품 등을 지원하는 한시적 확대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임.

- (여성가족과) 1건, 5천 5백만원 지출 결정하였으나 전액 이월함.

사유는 대상공원 맘스프리존의 조속한 개관을 위해 시설 내부 공간 기획 연구용역비와 시설 조성비 및 운영비(운영인력) 산정,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원가 및 수익성 분석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한 데 따른 것임.

용역명	맘스프리존 공간기획 용역	맘스프리존 관리운영 원가계산 용역
용역기간	2025.12.10. ~ 2026.2.7.	2025.12.29. ~ 2026.2.11.
용역비	19,730천원	9,900천원
용역업체	디자인에스이	재단법인 한국자치제도평가원
과업내용	지상1층 공간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운영방식 비교, 운영인원 및 운영비 산정 등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¹⁾ 및 「지방재정법」 제43조²⁾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상황 발생 또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 예비비 사용은 그 시급성을 고려하여 익년도에 지방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예비비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또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하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423p (예비비의 지출제한)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②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 제43조)
 - ① 지방의회의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사용 불가
 - ②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음
(단, 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 가능)

- 1)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측 가능한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비비 사용 시 사업의 사전 지출 규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예비비가 과소 또는 과다하게 집행되거나 불필요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